안전환경교육 Q&A

Q1. 안전환경교육(신규교육, 정기교육)의 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1. **신규교육**은 이공계열(미술대학 포함)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, 신규 임용 된 연구원, 교원, 직원이 대상이며, **정기교육**은 신규교육(최초 1회)을 이수한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체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교원, 직원 등)가 해당합니다.

Q2.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내 **「나의 강의실」** 페이지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.

A2. 먼저 신규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확인 방법**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→ 수료(이수)증 발급 메뉴 → 교육이력 메뉴 → 수료(이수) 여부 확인
- **상황별 안내**

2-1.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
매년 2~3월, 8~9월 또는 상시 개설되는 신규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정기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 신규교육 최초 1회 이수 후 매 학기 정기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.

2-2. 신규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

시스템 오류 등 환경안전원(02-880-5500)으로 연락해 주세요.

Q3.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이수 여부 및 수료(이수)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A3. 정기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온라인으로 수료(이수)증 발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.

- **확인 방법**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→ 수료(이수)증 발급 메뉴 → 교육이력 메뉴 → 수료(이수)증 출력

Q4. 신청한 정기교육(온라인강좌)을 모두 수강했는데, **「나의 강의실」** 페이지에 수료(이수)f로 표시 되지 않습니다.

A4. 학습하기 완료 되지 않은 부분으로 SNUON(etl)에서 **「**주차학습**」**을 클릭하여 미 학습 부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확인 방법**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→ 나의강의실 → SNUON(etl) → 주차학습 → 미 학습부분 완료

Q5.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5. 「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」 제8조(안전환경교육)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(대학(원) 및 연구소)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 신규 및 정기교육을 미이수 한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

※ 법적으로 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